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2가합257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박성진

피고1.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변론 종결2024. 10. 17.

판결 선고2024. 11. 28.

주 문

-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은 1,772/10,000 지분, 피고 D은 1,476/1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2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은 1,772/10,000 지분, 피고 D은 1,476/1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24. 7. 22. 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선택적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위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가. 망 E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24. 체결된 각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선택적 청구

가. 피고 C, D은 원고 및 피고 B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25. 접수 제124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 8. 25. 접수 제992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8. 31. 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예비적 청구

가. 제1 예비적 청구

1) 피고 C은 원고 및 피고 B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25. 접수 제124411호로 마친 9/10 지분이전등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 8. 25. 접수 제99290호로 마친 1/10 지분이전등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D은 원고 및 피고 B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25. 접수 제124411호로 마친 1/10 지분이전등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 8. 25. 접수 제99290호로 마친 9/10 지분이전등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23. 8.

31. 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에게,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은 1,772/20,000, 피고 D은 1,476/2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24. 7.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제2 예비적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1)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남편)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들 이외에 망인의 자녀로는 F이 있다.

2) 망인은 2022. 12.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 중 F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배우자인 원고가 3/9 지분,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언대용신탁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1) 망인은,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G동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토지는 'G동 토지', 건물은 'G동 건물'이라 한다) 중 G동 건물에 관하여 2021. 4. 29. 소유권보존등기를, G동 토지에 관하여 2022.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이하 'H동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토지는 'H동 토지', 건물은 'H동 건물'이라 하며, 이를 G동 각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24. 위탁자 망인, 수탁자 피고 C, 위탁자 생전 수익자 망인, 위탁자 사후 수익자 피고 C, D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25.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망인 사망 후인 2023. 1. 2. G동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9/10 지분, 피고 D 명의로 1/10 지분에 관하여 각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H동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1/10 지분, 피고 D 명의로 9/10 지분에 관하여 각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9, 12, 13호증, 을 3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운수업을 하면서 모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배우자인 망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인데,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 C, D과 공모하여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원고와 망인 간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종료되었거나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을 통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종료 또는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종료 또는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공동담보의 보전을 위해서만 인정되고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은 공동담보로부터 평등하게 변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데,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특정물 채권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종료 또는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주장하고 있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금전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는 있으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 17, 22 내지 27, 29, 30, 31, 33 내지 41, 44, 45, 46호증, 을나 9 내지 14, 16, 26, 27,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이고 다만 그 등기명의만을 망인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망인은 2017. 11. 7. G동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546,680,000원에 매수하여 2022.

7. 2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에 G동 건물을 신축하여 2021. 4.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16. 7. 29. H동 각 부동산을 L으로부터 85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6. 8. 5.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망인은 1984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의류 도·소매업을 하였고, 2008년경 이후에는 부동산임대업을 해 온 점, ② 망인은 2015. 11. 27. 망인의 소유로 등기된 서울 중랑구 M, K, I, J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2) 와 그 지상 건물 및 지장물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용에 따른 보상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2. 9.경 보상금으로 합계 1,875,567,020원을 지급받은 점, ③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서울 마포구 N 토지 및 그 지상 'O빌딩'을 2016. 6. 17.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각 부동산 이외에도 망인은 남양주시 P, Q 각 토지, 경기 가평군 R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건축할 정도의 자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는 당초 원고의 소유로 원고가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그 등기 명의만을 증여의 형식으로 망인에게 신탁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환지 및 보상금으로 망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소유에 해당하고, 특히 G동 건물은 당시 원고의 채권자(T)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그 등기명의만을 망인 앞으로 해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이외에도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특히 그중 서울 중랑구 U, V 각 토지는 S에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에 비추어 보면 S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만을 특별히 망인에게 명의신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T은 원고가 운영하던 S을 상대로 62억 원 상당의 미지급 인수대금 등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12.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59349호), G동 건물은 그 이후에 비로소 건축된 것이므로3), 원고가 T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G동 건물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망인의 사업소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고, 원고가 G동 및 H동 건물의 차임 징수, 세금 신고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관리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법원의 중랑세무서장에 대한 2024. 4. 11. 과세정보회신에 의하면 과세관청에 신고된 망인의 종합소득금액 중 1990년~2022년 사업소득은 합계 292,932,545원으로 적기는 하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이어서 소득신고금액만으로 자력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의류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해오면서 원고와는 별도의 수입, 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이 법원의 W조합이사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H동 건물에 관한 차임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G동 및 H동 건물을 관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 C, D은 원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해 망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계약은 피고 C, D이 망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망인과 공모하여 원고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피고 D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피고 C에게 단독으로 신탁된 것으로서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여 신탁법 제36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C, D은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 및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원고와 망인 간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을나 36호증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인데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이를 작성·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이 망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하였다거나 위 피고들이 망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C이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계약의 위탁자(망인) 사망 이후 유일한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계약이 피고 C, D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망인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망인이 혼인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계약 및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 소유에 해당하는 1/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 D은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 및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원고와 망인 간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 소유의 나머지 1/2 지분 중에서 피고 C은 1,772/20,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476/2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1 예비적 청구).

2) 만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와 망인의 공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은 1,772/10,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476/10,0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2 예비적 청구).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와 망인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반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반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51, 52호증, 을나 47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원고와의 혼인 중에 망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의류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해오면서 원고와는 별도의 수입, 자금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자신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G동 토지의 매수대금을 송금하고 H동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위 각 매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G동 건물의 건축비를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을나 1호증4)의 기재에 의하면 G동 건물의 건축비에는 피고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2019. 1. 31.경 망인에게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액을 송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망인에게 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망인은 2016. 8. 5. H동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G동 토지의 매수대금 지급 시기(2017. 11. 7.~2020. 5. 6.) 및 G동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시기(2021. 4. 29.)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위 3억 5,000만 원이 망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원고로부터 위 3억 5,000만 원을 받은 2019. 1. 31.부터

같은 해 2. 14.까지 위 돈을 자신의 X 계좌(세부적요 'Y은행-E-X')로 송금하거나 현금·수표로 출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위 3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를 망인에게 증여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환지 및 보상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망인과의 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대상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서(원고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환지로서 망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G동 토지'도 망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서 매수한 것이다) 망인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보상금 이외에도 별도의 수입, 자금 및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가를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가 원고로부터 망인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와 망인의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와 망인의 공유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가)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나) 적극적 상속재산액: 209,953,424원

을나 28호증의 29의 기재에 의하면, Z가 2021. 7. 21. 망인으로부터 이자 연 3.5%, 변제기 2021. 12. 31.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21. 7. 21. 자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Z에 대한 위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1.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22. 12. 21.까지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9,953,424원의 합계 209,953,424원은 망인의 상속채권으로서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 밖에 망인에게 사망 당시 적극재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상속채무: 1,143,090,410원(= 피고 C에 대한 채무 943,090,410원 + W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0,000,000원)

(1)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22. 8. 25. 피고 C으로부터 이자 연 5%, 상환일자 2022. 12. 25.로 정하여 9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차용증을 기초로 2022. 9. 19. '망인의 2022. 9. 19. 피고 C에 대한 현재 약정금 반환채무액이 94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자는 0%로 하며, 2022. 12. 15.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9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상 변제기한 다음 날인 2022. 12. 16.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22. 12. 2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090,410원의 합계 943,090,41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또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을나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공정증서가 진정성립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망인이 여러 부동산의 구입 자금, 공사비, 전세보증금 반환금 등의 용도로 피고 C으로부터 2020년경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하였고, 그 합계액이 94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C은 2020. 6. 23. 8,000만 원, 2020. 7. 2. 7,000만 원을 남양주시 AA리 일대 토지의 매도인 AB에게 지급하고, 2021. 6. 2. 1,000만 원, 2021. 6. 3. 900만 원, 2021. 8. 3. 1억 7,1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남양주시 AC아파트 AD호의 임차인 AE의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 내용'에 기재된 대로 피고 C이 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 C은 망인이 지출해야 하는 공사대금,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망인이 며느리 Z에게 대여해주기로 한 돈 등을 대신 지급해주면서 수차례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은 그러한 과거의 채무를 합하여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그 지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 또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을나 3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21. 7. 21. 자신이 소유하던 G동 건물에 관하여 W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서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인정되므로6), 이 사건 대출금 채무 2억 원은 망인의 상속채무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한편, 을나 3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24. 6. 7. 무렵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1,984,01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이자가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22. 12. 21.경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출원금인 2억 원만을 망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한다).

라) 원고 및 피고 B의 특별수익액: 없음

(1) 피고 C은, '① 피고 B의 처 Z가 남양주시 AA리 소재 AF 외 5필지 토지를 매수할 당시 2020. 6. 23. 매매계약금 중 80,000,000원 및 같은 해 7. 2. 중도금 중 70,000,000원의 합계

150,000,000원을 대납해주었음에도7) Z로부터 위 대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합계 168,653,424원[= 150,000,000원 + 9,994,520원(계약금 80,000,000원에 대한 2020. 6. 23.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22. 12. 2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 + 8,658,904원(중도금 70,000,000원에 대한 2020. 7. 2.부터 2022. 12. 2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 이하 '①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② Z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2021. 6. 29. Z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해주었음에도8) , Z로부터 위 대출상환금 및 이자 상당액의 합계 215,041,095원[= 200,000,000원 + 15,041,095원(200,000,000원에 대한 2021. 6. 29.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22. 12. 2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 이하 '②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망인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Z의 피고 C에 대한 ①, ② 금원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는 Z 또는 Z의 남편인 피고 B에 대한 망인의 증여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①, ② 금원은 망인의 재산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Z가 '피고 C'으로부터 받은 돈 및 이에 대한 각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고, 망인의 연대보증에도 불구하고 Z는 여전히 피고 C에 대해 ①, ② 금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종국적인 책임을 지므로, ①, ② 금원을 망인의 Z 또는 피고 B에 대한 증여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피고 C, D은, 망인이 2021. 7. 21. 자 차용증에 따라 Z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었으므로 위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합계 224,994,519원도 Z 또는 피고 B에 대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2021. 7. 21. 자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Z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망인의 Z 또는 피고 B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자 상당액은 Z 또는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7. 21. 자 차용증에 따른 망인의 채권은 적극적 상속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이미 산입되었다).

(3) 한편 피고 C, D은, 피고 B가 망인의 소유이던 서울 중랑구 AG, AH 토지의 수용 보상금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위 보상금은 피고 B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9) ,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 C, D의 특별수익액: 피고 C 1,817,754,384원, 피고 D 1,010,680,976원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등 참조).

(2) G동 각 부동산은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망인이 사망하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사후 수익자인 피고 C 명의로 9/10 지분, 피고 D 명의로 1/10 지분의 각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H동 각 부동산은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망인이 사망하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사후 수익자인 피고 C 명의로 1/10 지분, 피고 D 명의로 9/10 지분의 각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로의 이전은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는 점에서 성질상 무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 C, D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갑 5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 개시 당시인 2022. 12. 21.을 기준으로 G동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918,638,560원(= G동 토지 1,345,856,000원 + G동 건물 572,782,560원)이고, H동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909,796,800원(= H동 토지 696,000,000원 + H동 건물 213,796,8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 C, D의 각 특별수익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 C 1,817,754,384원, 피고 D 1,010,680,976원이다.

피고 C	G동 각 부동산 중 9/10 지분	1,726,774,704원	1,817,754,384원
H동 각 부동산 중 1/10 지분	90,979,680원		
피고 D	G동 각 부동산 중 1/10 지분	191,863,856원	1,010,680,976원
H동 각 부동산 중 9/10 지분	818,817,120원		

피고 C	G동 각 부동산 중 9/10 지분	1,726,774,704원	1,817,754,384원
합계	2,828,435,360원		

바) 소결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은 1,895,298,374원(= 적극적 상속재산액 209,953,424원 + 피고 C의 특별수익액 1,817,754,384원 + 피고 D의 특별수익액 1,010,680,976원 - 상속채무 1,143,090,410원)이다.

3)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3/18$ (= 법정상속분 $3/9 \times 1/2$), 피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2/18$ (= 법정상속분 $2/9 \times 1/2$)이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액은 315,883,062원(= 1,895,298,374원 $\times 3/18$, 원 미만 버림. 이하 특별히 다르게 기재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피고들의 유류분액은 각 210,588,708원(= 1,895,298,374원 $\times 2/18$)이다.

4) 특별수익액(C)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특별수익액은 1,817,754,384원, 피고 D의 특별수익액은 1,010,680,976원이고, 원고 및 피고 B의 특별수익액은 없다.

5) 순상속액(D)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209,953,424원, 상속채무는 1,143,090,4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순상속분액은 -311,045,662원[(209,953,424원 - 1,143,090,410원) $\times 3/9$]이고, 피고들의 순상속분액은 각 -207,363,774원[(209,953,424원 - 1,143,090,410원) $\times 2/9$]이다.

6)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A $\times$ B - C - D) 원고 및 피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양수는 유류분 부족액을, 음수는 유류분 초과액을 의미한다).

원고	1,895,298,374원	3/18	0	-311,045,662원	626,928,724원
피고 B	1,895,298,374원	2/18	0	-207,363,774원	417,952,482원
피고 C	1,895,298,374원	2/18	1,817,754,384원	-207,363,774원	-1,399,801,902원
피고 D	1,895,298,374원	2/18	1,010,680,976원	-207,363,774원	-592,728,494원

7) 유류분 반환방법 가)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나) 유류분 반환비율 및 유류분 반환 분담액

원고는 피고 C, 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고, 달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유류분 반환방법은 원물반환으로 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증여받았고, 피고 C, D의 유류분액은 각 210,588,708원(= 1,895,298,374원 × 2/18)이며, 피고 C의 유류분 초과액은 1,399,801,902원, 피고 D의 유류분 초과액은 592,728,494원이다.

이에 따라 피고 C, D의 유류분 반환비율 및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구체적인 유류분 반환 분담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C	626,928,724원	1,399,801,902원	1,399,801,902 / 1,992,530,396	440,432,940원
피고 D	592,728,494원	592,728,494 / 1,992,530,396	186,495,784원	

피고 C	626,928,724원	1,399,801,902원	1,399,801,902 / 1,992,530,396	440,432,940원
합계	1,992,530,396원	1	626,928,724원	

다) 구체적인 유류분 반환 범위

피고 C, D이 각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위 피고들이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안분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C	G동 각 부동산 중 9/10 지분	1,726,774,704원	418,389,011원 (=440,432,940원×1,726,774,704원/1,817,754,384원)	0.2422 (=418,389,011원/1,726,774,704원)
H동 각 부동산 중 1/10 지분	90,979,680원	22,043,929원 (=440,432,940원×90,979,680원/1,817,754,384원)	0.2422 (=22,043,929원/90,979,680원)	
합계	1,817,754,384원			
피고 D	G동 각 부동산 중 1/10 지분	191,863,856원	35,403,655원 (=186,495,784원×191,863,856원/1,010,680,976원)	0.1845 (=35,403,655원/191,863,856원)
H동 각 부동산	818,817,120원	151,092,129원 (=186,495,784원×818,817,120원/1,010,680,976원)	0.1845 (=151,092,129원/818,817,120원)	

피고 C	G동 각 부동산 중 9/10 지분	1,726,774,704원	418,389,011원 (=440,432,940원×1,726,774,704원/1,817,754,384원)	0.2422 (=418,389,011원/1,726,774,704원)
동산 중 9/10 지분				
합계	1,010,680,976원			

8)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D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유류분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지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G동 각 부동산 중 피고 C은 1,772/10,000 지분, 피고 D은 1,476/10,000 지분에 관하여, H동 각 부동산 중 피고 C은 1,772/10,000 지분, 피고 D은 1,476/10,000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4. 7.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4. 7. 22. 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9) 피고 C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르면 원고에게 대여금 9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8. 25.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22. 12. 21.까지 이자 상당액 15,323,287원의 합계 955,323,287원의 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반대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계는 동종의 반대채권에 한하여 가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에게 원물반환에 따라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명한 이상 금전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선택적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명희

판사강상우

판사김윤서

별지

- 1) 원고는 2024. 7.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기존의 청구취지 중 일부를 변경·취하하였는데, 피고 C, D은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2024. 10. 15.에야 위 일부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 의사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일부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2) 서울 중랑구 I, J각 토지는 K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다.
- 3) G동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위 건물 공사 착공일은 2020. 6. 23., 사용승인일은 2021. 4. 20.로 기재되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G동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2021. 4. 29. 마쳐졌다.
- 4) 을나 28호증의 1과 같다.
- 5) 한편 피고 C은, 망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9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8. 25.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22. 12. 2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5,323,287원의 합계 955,323,287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통해 망인의 피고 C에 대한 채무 내용이 최종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피고 C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 6) 망인은 2022. 7. 27. G동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G동 토지에 관해서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7) 을나 28호증의 3, 4
- 8) 을나 28호증의 25
- 9) 피고 C, D의 2024. 7. 12. 자 준비서면 7쪽
- 10) 합계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였다.
- 11) 피고별 부담하는 유류분 반환 분담액 × 개별 수증재산의 가액 / 피고별 전체 수증재산의 가액

합계(합계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였다).

12)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로 계산하고, 그 이하는 버린다.